

505보안부대의 조직과 활동

노영기 (조선대학교)

1. 전사(前史)

- 특무대는 육군본부 정보국 제2과(방첩과)를 확대시킨 육군본부 직할부대. 주한 미군 제24군단 G-2는 주한미군 방첩대의 임무를 계승할 군 방첩대(military CIC) 구성을 결정. 1948년 9월 일군의 국군 장교(육군과 해군)와 사관후보생들에게 1개월의 특무교육을 받기 위해 상경 명령 하달. 40명의 장교.후보생들이 9월 20일부터 6주의 특무(Special Investigation Section) 교육 ⇒ 각 부대의 방첩대 지부를 조직하라는 임무. 이후 전군 차원의 숙군을 주도.
-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과; 인천상륙작전 이후 '잔류한 5열을 색출한다'며 경인지구 CIC(대장 : 김창룡). 육군정보국 2과(방첩과)를 정보국으로부터 분리하여 대공 전담기구인 특무부대 설치, 1950년 11월 21일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특무부대 창설. 1951년 1월 8일 특무부대 상황실, 1월 19일 201, 202, 203, 205, 207, 209, 211부대. 2월 4일에는 101, 210, 506, 510, 105부대.
- 임무; '국가 및 군사안전 보장을 위하여 육군의 방첩에 관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군인 군속의 간첩 이적 요소 및 정치관여에 대한 범죄와 민간인의 간첩 이적에 대한 범죄를 수사'. 기능은 '간첩 오염의 적발, 태업선동 파괴의 분쇄, 적 유격대 공작원 및 적 정치공작원의 분쇄 적발, 반국가적 음모의 분쇄, 적의 지하조직 분쇄 적발, 군사안전보장의 기초조사, 국가안전보장의 기초조사(정치, 경제, 문화 각 부분 및 외국인), 범죄 미연방지의 조치, 포로 및 피난민의 심사' 등.
- 특무부대장 김창룡이 이승만의 신임을 얻은 뒤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구. 1951년 12월 10일 김창룡은 파견대장 회의에서 요시찰인 사찰업무와 C-5 공작의 강화와 사상범을 취급하는 일에서 특무대가 관계기관-헌병 및 군, 사단, 각 학교 정보처 등-을 완전 장악, 계엄령 선포 지구의 특무대는 헌병이나 경찰이 취급하고 있는 사상범 및 유격대의 취급을 완전 장악하도록 지시.
- 특무대; 이승만의 통제 아래 독자적 활동. 원래 특무대는 방첩업무만을 담당하

는 육군본부 직할부대였으나 김창룡이 이승만의 신임을 얻은 이후 대공수사를 목적으로 군내외 사찰 강화. 이승만 정권의 유지에 한 축. 1954년 '정국은 사건'을 통한 족청계 제거와 진보당 사건(양명산) 조작. '동해안 반란사건(이형근과 김종평)'처럼 군부의 동향 감시와 통제.

2. 보안사령부의 역할

- 보안사령부는 1979년 10·26사건을 어느 기관보다 먼저 인지. 전두환은 자신의 친구인 노태우에게 '有故'를 알리고 군 장악을 준비. 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보안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 김재규를 체포한 뒤 중앙정보부를 접수, 감독.
- 신군부는 자신들을 견제하려던 정승화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하는데 군을 동원. 중심 역할은 보안사령부. 보안사령부는 각 부대의 정보를 취합하고 작전을 구상. 각 부대의 연락 도청(보안처). 12·12군사반란을 진압하려던 지휘관들의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
- 이후 'K-공작'을 진행. 이 공작은 보안사령부가 앞장서 여론을 만들어가는 공작. 언론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하며 정권 장악에 유리한 지형을 형성하는 게 목표.
- 한편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운동 세력들에 대한 탄압 준비. 계엄사령부와 중앙정보부는 군 투입 예정. 중앙정보부는 북한 남침설을 제기.
- 5월 10일 중앙정보부 2차장 김영선은 일본 내각조사실로부터 입수한 이른바 '북괴 남침설' 첩보를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에게 보고.
- 북한은 한국 정부가 80. 4. 중순경에 김재규를 처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김재규 처형 시에는 항의데모사태가 발생을 해서 남침을 위한 결정적 시기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하여 남침시기를 4월 중순경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김재규의 처형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를 연기하여 오던 중에 80. 5. 들어 학생과 근로자의 소요사태가 격화되자 한국내 소요사태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80. 5. 15.부터 5. 20. 사이에 남침을 감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5월 10일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에서는 '북한 남침설'의 첩보는 북한의 일반적 남침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북한 군사동향은 정상적인 활동수준으로서 특이 전쟁 징후는 없음. 입수 첩보(5월 남침설 및 전방 병력배치 완료 설)는 신빙도가 희박하며, 이는 우리의 국내 정세 추이에 따른 북괴 남침방책의 일반적 가능성을 추측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결론. 미국도 특이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근거 없는 첩보로 판단. 미국은 10·26사건 이후부터 대통령 성명, 한미연합사령부 성명 등을 통해 북한에게 어떠한 도발도 하지 말도록 경고, 동시에 한미동맹에는 문제가 없음을 밝힘.
- '남침설'은 계엄위원회 회의에 계속 제기. 5월 12일 계엄사령부 일반참모부회의에서 황영시 육군참모차장 겸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 "북괴가 남침준비를 위해 병력 전개를 완료하였다는 일본의 첩보는 벌써 6회나 거짓말을 하고도 체면이 선다는 것인가? 혹시 그들의 고등술책일 수도 있다"고 짜증.
- 그럼에도 중앙정보부는 계속 시도, 정확하게는 집권계획을 상정한 신군부의 시도는 계속. 오히려 거짓 첩보를 증폭. 5월 12일 임시 국무회의가 긴급 소집되고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와 중앙정보부 담당국장이 「북괴남침설 분석 결과」를 보고. 또 군과 경찰에는 "최근 국내 소요사태 발생에 편승하여 북괴의 대남도발 침투가 예상된다"며 비상경계체제 돌입령 하달.
- 5월 16일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는 국방부장관에게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 5월 17일 11시 40분 국방부 1회의실에서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개최. '백지결의안(비상계엄전국확대) 결의.
- 5월 16일 전국 보안부대 대공과장 회의; 대공처의 주최로 예비검속 명단 발표 및 비상계엄 전국확대 대비. 서의남 참석. 전남대, 조선대 학생 명단을 제시.
⇒ 5월 17일 예비검속; 김대중, 김종필, 정동년, 김상윤, 양희승, 류소영 등등.

3. 505보안부대의 활동과 보안사령부

- 5월 17일 24시 비상계엄 전국확대; 군대의 대학가 점령과 포고문;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 언론 통제, 군이 민간사회를 통제.
- 신군부는 2월부터 군 투입을 계획하고, 5월 초순 경부터 구체적인 군 투입을

- 준비. 공수부대를 비롯한 충정부대의 이동 및 점거지 파악, 계엄 확대에 대비한 훈련 등등이 실행.
- 보안부대: 보안사령부의 지방부대.
 - 계엄령과 보안사령부: 계엄령이 공포되며 보안사령부가 군·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주도하는 구조. 1950년 한국전쟁기에 인천상륙작전 이후 관례(?).
 - 계엄령이 선포되는 순간부터 군이 행정과 사법권을 통제. 보안사령부는 수사기관을 지휘, 통제. 정보기관+수사기관.
 - 505보안부대 ⇒ 보안사령부: 상황실에 각종 보고, 사안에 따라 각 처로 직접 보고하거나 사령부에서 배분. 조직은 행정과, 보안과, 정보과, 대공과. 전교사를 비롯한 각 부대의 보안반이 존재. 금남로에 분실이 존재.
 - 이재우: 505보안부대장. 505보안부대의 활동 상황 전반, 기타 서울 파견 요원들의 활동상황 파악. 와병 중. 6월에 직위 해제.
 - 서의남: 505보안부대 대공과장. 예비검속 및 수사 실무책임자. 광주 시내 첩보수집
 - 최예섭: 보안사령부 기조실장. 5월 19일 오전 9시경 보안사령부 참모회의에서 광주상황에 대한 토의가 있는 뒤 당시 보안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인 최예섭 준장을 파견키로 결정. 최예섭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에 도착, 전투교육사령부 사령관 부속실에 기거하며 상황 파악을 하고 주요 회의에 참석. 전교사 상황실 통제. 5월 22일 육본 특명단과 협의. 홍석률과 유선 통화를 통한 정보 수집. 사령부와 직접 연결(보안사령부 참모장과 연락).
 - 홍석률: 합동수사본부 소속 치안본부 조정관. 광주일고 출신. 5월 19일 15시경 권정달 보안사령부 정보처장으로부터 광주로 가서 정보수집 등의 임무를 부여받고 5월 20일에 광주에 도착해 시내로 잠입. 광주시 사동의 친척 집에 기거하며 정보수집 및 특수임무 종사.
 - "(5. 23.) 18:30 시내에 잠복하여 특수임무를 수행중인 당 부대 홍석률 대령의 보고에 의하면, 극렬 폭도들의 약탈과 강제 동원 등으로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쌓여 극히 지쳐 있고, 야음을 이용한 폭도들의 각종 횡포로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음에도 계엄군은 폭도들의 소탕을 외면하고 있다 하여 계엄군에 대한 원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심지어 이런 계엄군을 믿고 어떻게 방위세를 낼 수 있느냐 등 흥분하고 있는 상태임...(2처)"으로 보고.

- 5월 21일 09시경부터 이른바 '지하정보' 활동을 전개. 505보안부대원과 전남도경 정보과 정보 2계장 등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 그는 경찰의 정보기능을 통합해 3개조의 정보조를 통합 지휘. 5월 24일 광주 시내를 빠져나가 송정리 비행장에서 대기하다 5월 27일 '상무총정작전'이 끝난 뒤 전남도경을 지휘 감독한 뒤 6월 초순 상경. 6월 초순 경에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정도영 보안처장 앞에서 5.18에 대한 종합보고. 김성한 중령(505보안부대 정보과장)과 유선 연락. 17명의 대원과 함께 시내로 잠입했으나 정확한 임무는 밝혀지지 않았음.
- 최경조: 전남합수단 부국장. 실질적인 수사 책임자. 수사 지침 관련 작성, 수사 상황 보고. 뒤에 '녹화사업' 기획 및 실무 책임자(서의남).
- 김성환(한): 505보안부대 정보과장. 홍석률과 유선통화, 5.18 이후 상황을 보고, 나경택 기자의 사진을 회수했던 인물로 추정. 김영택 면담, 고대 출신
- 보안사령부는 군의 진입에 앞서 시민군의 무선을 감청하려는 목적으로 예하의 515보안부대를 5월 26일 오후 7시에 광주 지역으로 이동.
- 상무총정작전을 앞두고 전투교육사령부는 '총정작전 제4호(1980. 5. 26)'를 지시. 그 중 '공격실시 방법'의 하나로 "사전 침투한 편의 공작 요원과의 연결 작전을 실시한다"고 명령. 또 상무총정작전을 앞두고 직접 침투할 공수부대의 하사관들이 편의대 복장으로 시내로 들어가 사전 정찰을 실시.
- 5월 26일 오전 7시 10분경 계엄분소 홍 대령(홍성률 대령?)이 광주시청에 외국인 거주사항(국적, 성명, 신분, 현주소)을 오전 10시까지 파악해달라고 요구. 그리하여 이날 오후 5시 23분에 미공군 소속 C-130 수송기 편으로 외국인 23명(미국 시민권자는 19명, 미국인 1명, 캐나다인 2명, 아프리카 1명)이 송정리비행장으로부터 오산기지로 소개.
- 박**: 505보안부대 문관, 전남도청 담당. 5.18 전후 전남도청 담당 보안부대원, 홍성률 부대원으로 활동, 언론검열 및 언론 통폐합 담당.
- **: 식당 주인. 광주시 사동 거주. 홍석률에게 협조

◎ 주요 활동

- 주요 사안에 대해 실시간으로 첩보(자체 수집, 전교사, 경찰과 행정기관, 민간 등등)를 실시간으로 수집. 서의남은 검찰에서 최예섭 처장이 내려와서 주민등록증을 요구했다고 진술. 전두환은 이러한 정보를 다양한 채널(참모장, 정보처

- 장, 보안처장, 최예섭, 홍성률, 505보안부대) 등을 통해 보고받음.
- 초기 강경진압,
 - 5월 19일 최초 발포: 경위 파악 및 응급 수술 의사 및 피해자. “관내 4개 파출소 파괴 집결 데모대가 쇠파이프 및 면도칼을 소지했던 점으로 보아 특정 배후 조직에 의한 조직적이고 기동력 있는 데모대로 판단”하며, “데모 진압병력에게 실탄을 미지급코 있고 경계 병력만 1인당 10발씩을 분출, 장교가 통합보관코 있을 뿐 아니라, 5. 19. 발포 사실 전무하였음을 감안할 때 고교생은 특정 데모세력에 의해 무성 권총으로 사격, 계엄군이 발포한 것으로 선동기 위한 지능적 수법”.
 - 5월 20일: 광주소요사태 33보. 02:20 3여단 병력이 전대로 복귀를 위해 탈출 시도, 앞을 가로막는 데모대를 돌파하기 위해 방망이 구타. 사망 2명, 중상 2명 발생
 -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상황: 13:40 무장난동자들이 탈취한 장갑차 1대가 도청 앞 분수대 옆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뚫고 도청으로 진출하다가 대치중인 계엄군의 발포로 동 장갑차는 바리케이드 속에 묻히었음.
 - 주남마을 사건.
 - 사체검안위원회: 6월 초순 보안과장이 주도. 사인(폭도/비폭도)을 수정. 박규호, 문형배.
 -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제일은행 앞 건물에 505보안부대 분실. 보안사 보안처장 정도영이 전화로 강경진압 독촉.
 - 정보 조작: 5·18은 김대중 추종세력의 선동, 깡패, 문영동의 사례, 광주교도소(류영선)의 사례.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이 전개됐을 가능성.

◎ 전남합동수사단

- 실제 수사 지휘는 보안사령부에서 주도. 최경조-서의남. 군검경 합동수사단. 서울에서 중앙정보부와 검찰이 직접 내려와 김대중과의 연관성 입증.
- 전남합수단: 단장은 이재우 대령(505보안부대장), 실제 지휘는 보안사령부에서 파견된 수사국장 최경조 대령, 실무는 부국장인 서의남 중령(505보안부대 대공과장)이 담당. 조직체계는 군 검찰과 검사 및 중앙정보부원으로 구성된 자문, 수사실무는 수사1과(학원), 수사2과(재야), 수사 3과(재야), 특명반, 대공과

- 등에서 담당. 그 외 조정통제과.
- 최초 33명 편성. 그 후 범죄수사단, 경찰, 중앙정보부 등 총 87명 운영. 총 2,522을 수사. 1,906은 훈방, 616명은 기소. 404명은 구속(내란죄 169명, 소요죄 173명, 계엄법 위반 47명, 기타 13명).
 - 「광주내란 및 소요사건 수사결과보고 시나리오」; '5.18'의 배경을 ① 김대중 추종세력의 음모, ② 주민들의 지역적인 소외의식에 따른 정부에 대한 불신감, ③ 전통적인 야경(野傾)적 기질, ④ 주민들의 빈부격차에 따른 정부정책 비판 등을 배경으로 “10.26 이후 사회혼란과 시위가 난무하자 이를 정권 쟁취의 호기로 판단한 김대중이 광주 학생을 자극 내란을 유발토록” 한 것. 또 광주내란사건으로 표현하며 이를 4단계(중앙과의 연계기, 비폭력시위기, 비조직 폭도화 시기, 조직 폭도화 시기)로 구분. 조직으로는 김대중과 연계된 재야 세력 외에도 조직 폭도체계로 ‘김원갑, 김창길, 김종배, 윤개원, 정상용, 김영철, 정해직, 박남수(선), 구성주, 장계범’ 등. 장계범을 “5. 25 08:00 독침사건을 날조 탈출, 자수한 자”로 묘사.
 - 7월 15일 서울에서 검사 2명과 중앙정보부 수사관 2명 등이 파견. 주로 “5. 17. 이전 학생 계열과 5. 22. 이후 홍남순 계열 연결문제, 5. 17. 이전 행위의 내란 공모내용 확정, 5. 22. 이후의 소요에서 내란으로 변신 시기, 김대중과 광주사태의 연결” 등을 검토. 즉 김대중과 5·18의 연계를 검토. 전남합수단은 내란 또는 소요죄는 정책적 결정, 광주시민들은 김대중이 내란 수괴라야 납득할 것이며, 처벌 범위는 500여명 정도로 결정하고 주요 임무 수행자 30~40명은 극형에 처할 것을 건의.
 - 예비검속 연행자들은 처음에는 포고령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내란음모 혐의로 조서를 재작성.
 - 7월 31일 합수부의 지시; 정동년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전남대 학생운동의 목표는 대규모 폭력사태 유발 및 전국적 민중봉기로 현 정부를 퇴진시키고 김대중을 추대해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것, 80. 5. 5 김대중 집에서 김대중에게 위 방침을 설명한 뒤 자금을 요청한 사실, 김대중으로부터 500만원 수수 및 정동년의 지시에 따라 박관현이 전남대 시위를 주동했다는 것’ 등. 이 지시에 따라 예비검속 대상자들은 조서를 다시 작성, ‘5.18’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주요 근거.

보안부대령의 변천

정문영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선임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군양철부대령(1960.7.20.: 국무원령 제36호) >> • 육군보안부대령(1968.9.23.: 대통령령 제3593호) >> • 국군보안부대령(1977.9.26.: 대통령령 제494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군보안부대령 • 시행 1968. 9. 23. • 대통령령 제3593호. 1968. 9. 23.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군보안부대령 • 시행 1970. 4. 20. • 대통령령 제4941호. 1970. 4. 20. <p>신부개정 cf. 『保安部隊』를 ‘보안부대령’, ‘리슈부’를 ‘서령부’로 한자를 한글로 변경하여 표기. 내용은 동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군보안부대령 • 시행 1977. 9. 26. • 대통령령 제8704호. 1977. 9. 26.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군보안부대령 • 시행 1978. 5. 4. • 대통령령 제9007호. 1978. 5. 4.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군보안부대령 • 시행 1980. 1. 23. • 대통령령 제9734호. 1980. 1. 23.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8년 5월 27일 육군정보국 정보처 내에 설립된 특별조사과를 모체로 하여 1948년 11월 특별조사대. 1949년 10월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대로 개편하면서 방첩교육을 마친 장교 및 간부 33명을 배치하고 간첩·부정부패처 색출업무를 전담. • 1950년 10월 육군본부 직할 특수부대로 독립하고, 1960년 7월 육군 방첩부대로 개칭하면서 간첩 검거, 베트남전쟁 피범, 1·21사태 진압. • 1968년 9월 육군보안서령부로 개칭. 보안지원 업무와 대공활동을 강화하고 응진·삼척 사태 진압을 지원. • 1977년 9월 국군보안서령부(약칭 보인서)로 통합. 1991년 1월 국군기무서령부로 개칭. <p>1977년 9월 국방부 직속으로 개편하면서 법문적인 권한을 구체화 1980년 1월 23일 입부와 권한에 “군 및 군과 관련된 모든 첩보의 수집,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것은 논여거분 대목. 즉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라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시찰” 권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p>	<p>제1조 (설치와 임무) 육군에 보안 및 방첩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보안부대령(이하 “보안부대령”라 한다)을 둔다.</p>	<p>제1조 (설치와 임무) 육군보안 및 국방방첩에 관한 사항과 군법회의법 제44조 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국군보안부대령(이하 “보안부대령”라 한다)을 둔다.</p>	<p>제1조 (설치와 임무) 군사보안 및 국방방첩에 관한 사항과 군법회의법 제44조 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1. 인병과의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 2. 법령에 의한 방첩부대에 소속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으로서 방첩사무에 종사하는 자 제44조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인계) 군사법경찰관은 군법회의의 관할사건을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수사한다.<개정 1972.12.26> 1. 진조 제1호에 규정된 자는 다음 제2호에 규정하는 이외의 일체의 범죄 2. 진조 제2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군형법 제2편 제1장 및 제2장의 죄, 형법 제2편 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 제81조, 국가보안법·반공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p>	<p>제2조 (구성) 보안부대는 보안서령부(이하 “서령부”라 한다)와 각군본부 보안부대, 부대지원보안부대, 군수신명보안부대, 통신보안부대 및 보안교육대로 구성된다. 제3조 (서령관 등) (1) 서령부에 서령관, 부사령관과 참모장을 각군본부보안부대, 부대지원보안부대, 군수신명보안부대, 통신보안부대에 각각 부대장을, 보안교육대에 교육대장을 둔다. (2) 서령관은 장편급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p>	<p>제1조 (설치와 임무) 군사보안 및 국방방첩에 관한 사항, 군법회의의 법 제44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과 군 및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 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국군보안부대(이하 “보안부대”라 한다)를 둔다.<신문개정 1980.1.23></p>
	<p>제2조 (구성) 보안부대는 보안서령부(이하 “리슈부”라 한다)와 지구보안부대 및 보안교육대로 구성된다.</p>	<p>제2조 (구성) 보안부대는 보안서령부(이하 “리슈부”라 한다)와 지구보안부대, 부대지원보안부대, 군수신명보안부대, 통신보안부대 및 보안교육대로 구성된다. 제3조 (서령관 등) (1) 서령부에 서령관과 참모장을, 지구보안부대에 지구보안대장을, 보안교육대에 교육대장을 둔다. (2) 서령관은 육군장편급장교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p>	<p>제2조 (구성) 보안부대는 보안서령부(이하 “서령부”라 한다)와 각군본부 보안부대, 부대지원보안부대, 군수신명보안부대, 통신보안부대 및 보안교육대로 구성된다. 제3조 (서령관 등) (1) 서령부에 서령관, 부사령관과 참모장을 각군본부보안부대, 부대지원보안부대, 군수신명보안부대, 통신보안부대에 각각 부대장을, 보안교육대에 교육대장을 둔다. (2) 서령관은 장편급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p>	<p>제2조 (구성) 보안부대는 보안서령부(이하 “서령부”라 한다)와 각군본부 보안부대, 부대지원보안부대, 통신보안부대 및 보안교육대로 구성된다.<개정 1978.5.4> 제3조 (서령관 등) (1) 서령부에 서령관과 참모장을 각군본부 보안부대, 부대지원보안부대, 통신보안부대에 각각 부대장을, 보안교육대에 교육대장을 둔다.<개정 1978.5.4> (2) 서령관은 장편급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p>	<p>제2조 (구성) 보안부대는 보안서령부(이하 “서령부”라 한다)와 각군본부 보안부대, 부대지원보안부대, 통신보안부대 및 보안교육대로 구성된다.<개정 1978.5.4> 제3조 (서령관 등) (1) 서령부에 서령관과 참모장을 각군본부 보안부대, 부대지원보안부대, 통신보안부대에 각각 부대장을, 보안교육대에 교육대장을 둔다.<개정 1978.5.4> (2) 서령관은 장편급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p>

	<p>(3) 참모장은 육군장관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지구부대장 및 교육대장은 육군영관급장교로 보한다.</p>		<p>제정으로 대통령이 보한다.</p> <p>(3) 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장관급장교로, 각군본부 보안부대장 및 군수선임보안부대장은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부대지원보안부대장·통신보안부대장 및 보인교육대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p>	<p>(3) 참모장은 장관급장교로, 각군본부 보안부대장은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부대지원보안부대장·통신보안부대장 및 보인교육대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개정 1978.5.4></p>	
<p>제4조 (직무)</p> <p>(1)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보안부대의 업무를 통괄하고, 지구보안부대 및 보인교육대와 기타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p> <p>(2)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통제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3) 지구부대장과 교육대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대무를 처리하며, 소속 대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4조 (직무)</p> <p>(1)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보안부대의 업무를 통괄하고, 지구보안부대 및 보인교육대와 기타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p> <p>(2)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통제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3) 지구부대장과 교육대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대무를 처리하며, 소속 대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4조 (직무)</p> <p>(1)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보안부대의 업무를 통괄하고,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p> <p>(2)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3)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통제한다.</p> <p>(4) 각군본부보안부대장, 부대지원보안부대장, 군수선임보안부대장·통신보안부대장 및 보인교육대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대무를 처리하며 소속대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4조 (직무)</p> <p>(1)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보안부대의 업무를 통괄하고,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p> <p>(2)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3)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통제한다.</p> <p>(4) 각군본부보안부대장, 부대지원보안부대장, 군수선임보안부대장·통신보안부대장 및 보인교육대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대무를 처리하며 소속대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4조 (직무)</p> <p>(1)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보안부대의 업무를 통괄하고,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p> <p>(2)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여 참모업무를 조정·통제하고,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78.5.4></p> <p>(4) 각군본부 보안부대장, 부대지원보안부대장, 통신보안부대장 및 보인교육대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대무를 처리하며 소속대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78.5.4></p>	<p>제4조 (직무)</p> <p>(1)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보안부대의 업무를 통괄하고,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p> <p>(2)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여 참모업무를 조정·통제하고,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78.5.4></p> <p>(4) 각군본부 보안부대장, 부대지원보안부대장, 통신보안부대장 및 보인교육대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대무를 처리하며 소속대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78.5.4></p>
<p>제5조 (부대의 참모부서의 설치 등)</p> <p>(1) 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의 참모부서를 둔다.</p> <p>(2) 전향의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p> <p>(3)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p>	<p>제5조 (부대의 참모부서의 설치 등)</p> <p>(1) 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의 참모부서를 둔다.</p> <p>(2) 전향의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p> <p>(3)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p>	<p>제5조 (부대의 참모부서의 설치 등)</p> <p>(1) 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의 참모부서를 둔다.</p> <p>(2) 제1항의 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임무·조직과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p>	<p>제5조 (부대의 참모부서의 설치 등)</p> <p>(1) 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의 참모부서를 둔다.</p> <p>(2) 제1항의 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임무·조직과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p>	<p>제5조 (부대의 참모부서의 설치 등)</p> <p>(1) 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의 참모부서를 둔다.</p> <p>(2) 제1항의 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임무·조직과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78.5.4></p>	<p>제5조 (부대의 참모부서의 설치 등)</p> <p>(1) 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의 참모부서를 둔다.</p> <p>(2) 제1항의 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임무·조직과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78.5.4></p>
<p>제6조 (지구보안부대 등의 명칭 및 위치)</p> <p>지구보안부대 및 보인교육대의 명칭·위치 및 그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p>	<p>제6조 (지구보안부대 등의 명칭 및 위치)</p> <p>지구보안부대 및 보인교육대의 명칭·위치 및 그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p>	<p>제6조 (각군본부 보안부대 등의 위치 및 임무 등)</p> <p>각군본부 보안부대, 부대지원보안부대, 군수선임보안부대·통신보안부대 및 보인교육대의 위치·임무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p>	<p>제6조 (각군본부 보안부대 등의 위치 및 임무 등)</p> <p>각군본부 보안부대, 부대지원보안부대, 통신보안부대 및 보인교육대의 위치·임무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78.5.4></p>	<p>제6조 (각군본부 보안부대 등의 위치 및 임무 등)</p> <p>각군본부 보안부대, 부대지원보안부대, 통신보안부대 및 보인교육대의 위치·임무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78.5.4></p>	<p>제6조 (각군본부 보안부대 등의 위치 및 임무 등)</p> <p>각군본부 보안부대, 부대지원보안부대, 통신보안부대 및 보인교육대의 위치·임무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78.5.4></p>
<p>제7조 (정원)</p> <p>(1) 보안부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p> <p>(2) 전향의 군인의 군속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그 담당업무를 처리한다.</p>	<p>제7조 (정원)</p> <p>(1) 보안부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p> <p>(2) 전향의 군인의 군속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그 담당업무를 처리한다.</p>	<p>제7조 (정원)</p> <p>(1) 보안부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p> <p>(2) 제1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p>	<p>제7조 (정원)</p> <p>(1) 보안부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p> <p>(2) 제1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p>	<p>제7조 (정원)</p> <p>(1) 보안부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p> <p>(2) 제1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p>	<p>제7조 (정원)</p> <p>(1) 보안부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p> <p>(2) 제1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p>
<p>제8조 (무기사용)</p> <p>(1) 사령관은 군속을 제외한 소속 부대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무기를 휴대시킬 수 있다.</p> <p>(2) 전향의 규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헌법무기사용령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8조 (무기사용)</p> <p>(1) 사령관은 군속을 제외한 소속 부대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무기를 휴대시킬 수 있다.</p> <p>(2) 전향의 규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헌법무기사용령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8조 (무기사용)</p> <p>(1) 사령관은 군속을 제외한 소속 부대원에게 직무수행상 필요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p> <p>(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휴대하는 자가 무기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헌법무기사용령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의 동령 제5조에 규정된 "헌법시령관"은 이를 "보안시령관"으로 본다.</p>	<p>제8조 (무기사용)</p> <p>(1) 사령관은 군속을 제외한 소속 부대원에게 직무수행상 필요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p> <p>(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휴대하는 자가 무기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헌법무기사용령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의 동령 제5조에 규정된 "헌법시령관"은 이를 "보안시령관"으로 본다.</p>	<p>제8조 (무기사용)</p> <p>(1) 사령관은 군속을 제외한 소속 부대원에게 직무수행상 필요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p> <p>(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휴대하는 자가 무기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헌법무기사용령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의 동령 제5조에 규정된 "헌법시령관"은 이를 "보안시령관"으로 본다.</p>	<p>제8조 (무기사용)</p> <p>(1) 사령관은 군속을 제외한 소속 부대원에게 직무수행상 필요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p> <p>(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휴대하는 자가 무기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헌법무기사용령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의 동령 제5조에 규정된 "헌법시령관"은 이를 "보안시령관"으로 본다.</p>
<p>부칙 <대통령령 제3593호, 1968. 9. 23.></p> <p>(1)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2) (폐지법령) 육군보안부대령은 이를 폐지한다.</p> <p>(3) (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의 육군보안부대는 이 령에 의하여 설치된 육군보안부대로 본다.</p>	<p>부칙 <대통령령 제3593호, 1968. 9. 23.></p> <p>(1)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2) (폐지법령) 육군보안부대령은 이를 폐지한다.</p> <p>(3) (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의 육군보안부대는 이 령에 의하여 설치된 육군보안부대로 본다.</p>	<p>부칙 <대통령령 제4941호, 1970. 4. 20.></p> <p>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칙 <대통령령 제8704호, 1977. 9. 26.></p> <p>(1)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2) (폐지법령) 육군보안부대령은 이를 폐지한다.</p> <p>(3)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각군의 각급보안부대에 계속중인 사기는 각각 이 영에 의한 동급의 각급보안부대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p>	<p>부칙 <대통령령 제9007호, 1978. 5. 4.></p> <p>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부칙 <대통령령 제9734호, 1980. 1. 23.></p> <p>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